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육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육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변 호	278
------------	-----

발의연월일 : 2024년 4월 1일

발 의 자 :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공립박물관의 무료화 추세 확산 및 저작권법에 따른 관람료 징수시 저작권 방어에 어려움이 있어 성북선잠박물관과 성북근현대문학관의 관람료를 무료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를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관람 및 매표시간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6조)

다. 관람료 납부 및 면제 등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저작권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문화체육과

라. 입법예고 : 2024. 4. 4. ~ 2024. 4.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여”란 전시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소장품”이란 구입·기증·관리전환·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권리권한을 취득한 자료를 말한다.
7. “시설”이란 박물관의 시설, 부속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8. “관람료”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수강료”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6조의 제목 “(관람시간)”을 “(관람 및 매표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 ③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 ① 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 전시하는 경우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별표 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별표 2의 제목 “관람료 (제7조제1항 본문 관련)”을 “관람료 상한 (제7조 제2항 본문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대여”란 전시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6. “소장품”이란 구입·기증· 관리전환·위탁관리 등의 방 법으로 소유권이나 권리권한 을 취득한 자료를 말한다. 7. “시설”이란 박물관의 시설, 부속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 다. 8. “관람료”란 전시물 또는 시설 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 는 요금을 말한다. 9. “수강료”란 박물관에서 운영 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 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6조(관람 및 대표시간) ① 박물 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 대표시간은 오전 10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납부 및 면제 등) ① 박물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람료를 전액 반환한다.

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납부 및 면제 등) ① 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 전시하는 경우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별표 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	------------------

[별표 2]

관람료(제7조제1항 본문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어 른	1,000원	800원	
청 소 년	500원	400원	13세 ~ 18세(중 · 고등학생)
어 린 이	300원	200원	7세 ~ 12세(초 등학생)

※ 성북구민(신분증 소지자) 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50% 할인 금액을 적용한다.

[별표 2]

관람료 상한(제7조제2항 본문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어 른	5,000원	
청 소 년	2,500원	13세 ~ 18세(중 · 고등학생)
어 린 이	1,300원	7세 ~ 12세(초 등학생)

※ 성북구민(신분증 소지자) 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50% 할인 금액을 적용한다.